
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31] <개정 2025. 12. 2.>

교육용 자동차의 표지등, 도색 및 표지(제102조제2항관련)

1.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

가. 도색

- 바탕색: 황색(제1종 보통면허는 백색)

나. 표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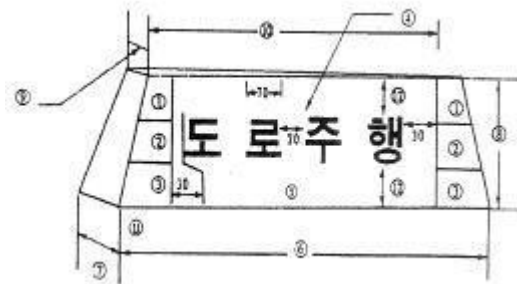
- 측면에는 녹색으로 시·도 및 학원명(전문학원인 경우에는 전문학원명)을,
후미에는 백색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고유번호를 표시하여 부착



2.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등

가. 모형 및 규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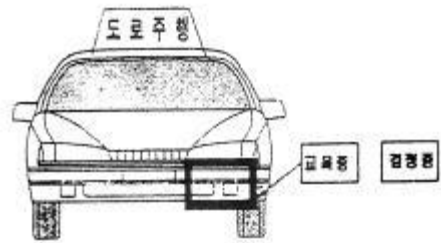
- ① 적색
- ② 황색
- ③ 녹색
- ④ 적색문자
- ⑤ 바탕색은 백색
- ⑥ 600밀리미터
- ⑦ 160밀리미터
- ⑧ 180밀리미터
- ⑨ 60밀리미터
- ⑩ 500밀리미터
- ⑪ 100밀리미터
- ⑫ 35밀리미터



나. 설치위치

-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
- 도로주행교육 중에는 “교육중”이라는 표지를,
도로주행기능검정 중에는 “검정중”이라는 표지를

각각 자동차의 앞뒤 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



3.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

가. 도색

- 차량의 바탕색은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나. 차량 전면·후면의 표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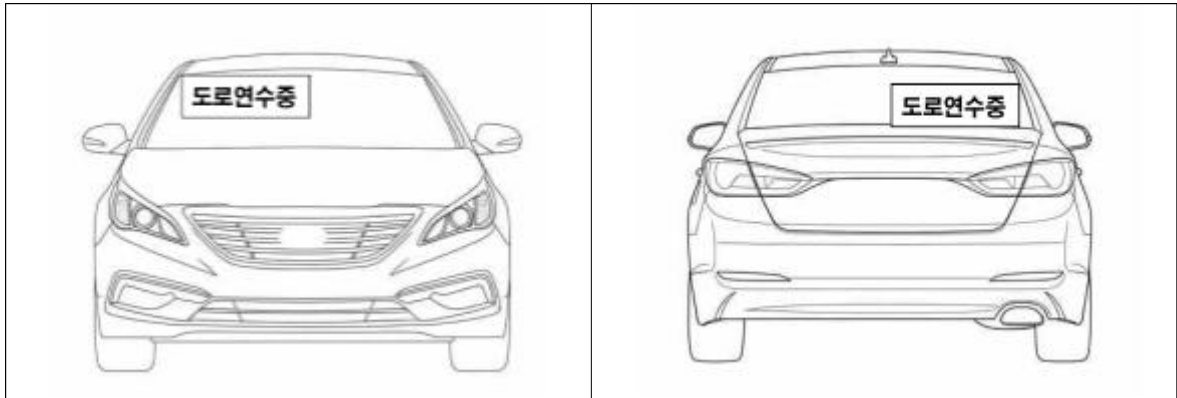
- 표지 내용 및 규격: “도로연수중”을 기재한 (가로 30cm ×세로 11cm)의 직사각형 표지



- 표지 색상: 바탕은 노란색, 글씨는 검정색
- 표지 제작 방법: 반사지 스티커로 제작
- 표지 부착 위치: 앞면유리 우측(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) 상단 및 뒷면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

차량 전면 표지(가로 30cm×세로 11cm)

차량 후면 표지(가로 30cm×세로 11cm)



다. 차량 옆면 표지

- 표지 내용: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는 좌우 측면에 소속 시·도 및 학원명, 전화번호를 표시
- 표지 색상: 표지의 색상은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
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표지 제작 방법: 탈부착이 가능한 무극성 자석을 이용하여 제작 및 부착

차량 옆면 표지(무극성 자석을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좌·우 상호표기)

